

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9.
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개정이유

- 정기재물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- 내무부및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·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에 의거 안산시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소모품의 범위기준(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중 별표1) 중에서 "내용년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, 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"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 필요

□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중 별표 1 (품종구분 기준)

○ 예산집행 : 해당없음

○ 기타참고사항 : 경기회계 13330 - 2022 ('96. 8. 2)호로 시·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 시달

안산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

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5조증 [별표 1]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(2) 소모품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, 소모,

파손되기 쉬운 물품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51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 . 10 . 17 .
제 안 자 : 총 무 위 원 장
정윤섭의원 외 10인

1. 수정이유

소모품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우려
되므로 소모품의 범위를 하향 조정함.

2. 수정주요골자

물품의 품종, 상태구분, 물품 구분기준 소모품 ④중 "취득단
가가 10만원이하"를 "취득단가가 7만원이하"로 수정함.

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

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중 [별표1]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(2)소모품 ④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7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

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제5조 [별표1]의 품종구분기준 (2) 소모품</p> <p>④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<u>10만원</u>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, <u>파손되기 쉬운 물품</u></p>	<p>제5조 [별표1]의 품종구분기준 (2)소모품</p> <p>④ 7만 원..... </p>